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86

발의연월일 : 2020. 12. 17.

발 의 자:이종성・박성중・박형수

이종배 · 임이자 · 김형동

서정숙 · 김상훈 · 서일준

정운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정원의 3.4% 이상은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고용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한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경제 활동참가율은 낮은 수준이며, 코로나19의 지속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민간기관의 장애인 고용 유지를 독려하고 장애인 고용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등이 장애인 고용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3.4%에서 4.0%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제28

조의2 및 제79조제1항).

법률 제 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7
- 2. 2024년 이후: 1천분의 40

제28조의2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7
- 2. 2024년 이후: 1천분의 40

제79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7
- 2. 2024년 이후: 1천분의 4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 제27조제1 항, 제28조의2 및 제79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 는 경우에는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년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부 담금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제3조(부담금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서는 제 27조제1항, 제28조의2 및 제79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 담금을 산출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2	<u>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7</u>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2. 2024년 이후: 1천분의 40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	고용률의 특례)
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	
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	
관・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	
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	
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 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 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2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27 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 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 는 버린다.
 -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9
 -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 ②・③ (생 략)

•	
	_
	-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u>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7</u>	
2. 2024년 이후: 1천분의 40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①	-
	-
	-
	-
	-
	-
	-
	-
	-
	-
<u>.</u>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u> </u>
<u>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7</u>	
2. 2024년 이후: 1천분의 40	
②·③ (현행과 같음)	